

영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의 안	
번 호	181

발의년월일 : 2005. 4.

발의 의원 : 박찬훈의원 외 3명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 정례회의 회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법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며
- 아울러 금년 7월부터 매주 토요휴무제가 실시됨에 따라 12월1일 집회하는 제2차 정례회의 효율적인 회기운영과 행정사무감사의 심도있는 실시를 위해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이내로 하는 규정을 삭제함(안 제3조)
- 나.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제1차 정례회의에서 실시함(안 제5조제1항)

3. 자치법규안 : 덧붙임

4. 신구대비표 : 덧붙임

5. 참고자료 : 관련 법령(발췌) 1부

영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영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영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“영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”으로 한다.

제3조를 삭제한다.

제5조 제1항 중 “제1차 정례회에서는”을 “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”로 한다.

제5조 제2항 중 “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”를 “제2차 정례회에서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대비표

【영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】

제정·개정일	제정·개정일	제정·개정일
제3조(회기)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.	제3조(회기) <삭제>	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 개정
제5조(심의)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	제5조(심의)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	행정사무감사를 2차 정례회에서 1차 정례회로 변경

관 련 법령(발췌)

【지방자치법】

제36조(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)

-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·도에 있어서는 10일, 시·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 7일의 각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사무에 관하여 본 회의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,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·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·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각각 당해 시·도의회와 시·군 및 자치구의회가 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회와 시·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당해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,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.
-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.
-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제4항 및 제5항의 선서·증언·감정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1조(개회 · 휴회 · 폐회와 회의일수)

- ① 지방의회의 개회 · 휴회 · 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이를 정한다
- ② 정례회의 회기는 년 2회를 합하여 시 · 도의회의 경우 40일 이내, 시 · 군 및 자치구의회의 경우 35일 이내로 하고,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<삭제 2005. 1. 27>
- ③ 년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시 · 도에 있어서는 120일, 시 · 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

【지방자치법시행령】

제19조의2(운영규정)

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

제19조의4(정례회의 집회일정)

- 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중 제1차정례회는 매년 6월 · 7월 중에, 제2차 정례회는 11월 · 12월중에 집회하여야 한다. 다만,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· 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승인 및 기타 지방의회에의부의안건
 2.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자방의회에의부의안건
- ③ 법 및 이 영이 정한 사항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